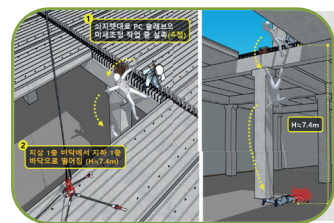


P.C. 슬래브 위치 조정 중 인접 개구부로 추락

재해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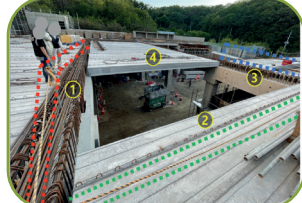
발생형태	부상 정도	연령	동종경력
떨어짐	사망 1명	만58세	



‘22. 5. 5.(목) 13:20경 충남 천안시 소재 ○○물류창고 신축현장에서 지상 1층 P.C 슬래브 인양 및 안착 후 쇠지렛대를 이용해 위치 조정 중 지하 1층으로 떨어져(H≒7.4m) 사망

※ P.C. SLAB : Precast Concrete Slab로 건축공사의 공기단축 등을 위해 콘크리트 부재 (기둥, 보, 슬래브)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기성 콘크리트 부재

작업상황

정상	비정상	
P.C. 슬래브 인양 설치 작업 전 개구부에 추락방호망을 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	P.C. 슬래브 연속 거치 작업 구간에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→ 인양 전 P.C. 보 상부는 안전대부착설비를 지상 조립하나, P.C. 슬래브는 거치작업 여건상 부착설비를 지상 미조립	 <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상태 > * ①,②,③구간은 설치, ④구간은 미설치

발생원인

- ▶ **직접원인** 떨어짐 방지조치 미실시 P.C. 슬래브 인양·설치 작업 시 개구부 떨어짐 방지를 위해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부착설비 등의 떨어짐 방지 조치 미실시
- ▶ **기여요인**
 - 작업계획 미작성 및 근로자 주지 미흡 P.C. 부재 등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추락, 낙하, 전도, 협착, 붕괴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 미작성 및 근로자 주지 미흡
 - 작업지휘 및 관리감독 미실시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한 P.C 부재 설치 작업 시 작업지휘자가 미상주한 상태에서 근로자 안전대 착용·체결 여부, 작업계획대로 작업 수행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 미실시

동종재해 예방대책

- ▶ **P.C. 설치 등 고소 작업 시 근로자 떨어짐 방호조치 철저**
 - P.C. 설치 작업 시 고소 작업 중 개구부로 떨어질 위험이 있을 경우 추락방호망을 치거나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도록 하여야 함.
- ▶ **P.C. 설치 작업에 대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 수립·이행 및 근로자 교육 철저**
 - P.C. 설치 작업 시 P.C. 부재(기둥, 보, 슬래브)의 인양 및 설치(거치, 조립) 과정에서 근로자의 떨어짐, 부재의 낙하·전도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작업 전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켜야 함.
- ▶ **작업지휘자 배치 등 현장 관리감독 철저**
 -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한 P.C. 부재 인양 및 조립 작업 시 기수립된 작업계획대로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하고,
 - 근로자의 개인보호구(안전모, 안전대 등) 착용 및 체결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.

※ 본 O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